

2025년도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중앙실험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학내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제공 및 연구시설 사용 등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중앙실험실 입주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 강 건 육

1 입주기업 모집 개요

가 목적

- 서울대학교 창업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 서울대학교 바이오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중개연구 협업 및 산학연병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입주공간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81동 3층 중앙공용실험실(364호)
 - 창업공간 : 서울대학교 창업교원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사용 공간(1 Bench 지정석 기준)
 - 공동사용공간 : 공동기기실, 회의실, 창고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
- 기간 : 입주일로부터 중간 평가를 통해 1년 계약 후 재계약
 - *최대 3년 입주 가능(1년 계약 원칙)
 -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공간위원회 심사 후 연장 가능
 - *최대 연장 기간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용료 : 월사용료 납부기준

구분	월사용료			수용가능 Bench 수	
실험벤치	시설사용료	40만원	50만원	WET Bench	30개
	공간임대료	10만원		DRY Bench	18개

*시설사용료는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공간임대료는 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로 배정

가 모집 대상

- 대상
 - 바이오융합 연구자 또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공간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일함
 - (1) 1군.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을 통해 연구비를 관리하고 간접비를 납부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 (2) 2군. 서울대학교 교원이 창업한 기업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으로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함
 - (3) 기타: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은 전임교원
 -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자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연구센터 운영자
 - 모집 규모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모집 분야

- 바이오 기술창업
- 바이오 융합창업(AI 포함)
- 기타 바이오 관련 창업

3

신청 및 평가기준

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02. 05.(수) 18:00까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02. 26.(수) (결과는 이메일 개별 통지)
- 입주가능일 : 2025. 03. 03.(월)
-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감 서명 날인해서 스캔 후 PDF로 제출
2	대표자 이력서	작성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후 PDF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스캔 후 PDF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스캔 후 PDF 제출
6	재무재표증명원	사본 스캔 후 PDF 제출
7	개인정보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인감 서명 날인해서 스캔 후 PDF로 제출
8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사본 스캔 후 PDF 제출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수상실적 등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 과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1,2,7,8번과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국세청 발행 후 PDF 파일) 제출 요망

나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홈페이지(<https://bio-max.snu.ac.kr/>)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이메일(starry28@snu.ac.kr) 제출
- 문의처 : 사업개발부
- 김진선 직원 Tel 02-880-2885

다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100점)
 - 기술성
 - 비즈니스 모델 전략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자본조달계획의 적정성
 - 서울대학교 바이오 연구자와 융합연구 가능성 등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평가 내용 및 결과 비공개(결과 이메일 개별 통지)
 - 평가 후 선정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함

가 입주공간 제공

- 입주공간 개요
 - 연구 장비 사용료 배정
 - 오픈형 사무공간 외 회의실 등 이용 가능
- ※ 임대료 금액, 기간 등은 생공연 공간 사용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바이오 관련 기술사업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학연병 네트워킹 활성화
- 서울대학교 교원 공동과제 협업 활성화
- 공동 장비 시설 및 공용 장소 사용(창고, Cold chamber, 중앙실험실, 공동기기실 등)
 - ※ 고가 장비는 사용료 부과 될 수 있음
 - ※ 공동 사용 기기 목록 : 별첨 2. 공용 기기 목록
- 각종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참여
- 멘토링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사업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자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사업자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으로 제한되는 업종 영위자

순번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별도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복수혜 제한 : 본 사업 이외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입주 공간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입주 공간을 제공받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중복되는 경우)